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언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456

발의연월일: 2025. 3. 28.

발 의 자:이언주·허성무·황명선

소병훈 · 황정아 · 김현정

안도걸 • 이재관 • 김정호

민홍철 · 정성호 · 정진욱

권향엽 · 이상식 · 황 희

강준현 • 이개호 • 유준병

김동아 의원(19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」이 첨단조선업자가 국외에 방위산업물자 등에 해당하는 선박 등을 수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(안 별표 2 제72호 신설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」(의안번호 제934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#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2. 「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